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등을 위반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8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인)			주요 경력종목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주소			
박명수	68****	부산광역시 (이하 생략)	건축 중급	업무정지 4개월 (2024.06.15. ~ 2024.10.14.)	거짓신고(2회)
허남학	57****	부산광역시 (이하 생략)	기계 특급	업무정지 1개월 (2024.06.15. ~ 2024.07.14.)	건설사업관리보고서 내용 누락

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1]

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 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☎051-660-10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